#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

(채유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844 발의연월일: 2020. 8. 12.

발 의 자:채유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고병국, 권영희,

김경우, 김생환, 김소양,

김용석, 김정태, 김종무,

김호진, 노식래, 문병훈,

문장길, 박기재, 박순규,

송재혁, 오현정, 유 용,

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

이현찬, 임종국, 장인홍,

전병주, 정진술, 최 선,

최정순, 추승우, 한기영,

홍성룡 의원(31명)

### 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,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- 나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수립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다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· 운영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10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없음

#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계 선지능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, 여가·문화생활에 필요한 평 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 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경계선지능인"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.
- 2. "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"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의 기초·문자해득 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경계선지능인 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4조(다른 법령등과의 관계)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 한다.
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  - 2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 - 3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·개발·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· 운영에 관한 사항
  - 5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)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,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
- 2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, 운영 및 지원
- 3.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- 4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
- 5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
- 6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
- 7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7조(위탁 등)**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 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2.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- 4.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- 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지도·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 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9조(공동사업 추진)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, 의료기관, 평생교육기관,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Ⅰ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5조(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), 제6조(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), 제7조(위탁), 제8조(지도·감독), 제9조(공동사업 추진), 제10조(지원 사업)에 따라 비용 발생 ※ 단, 제9조(공동사업 추진)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지원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(제5조제1항)
-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(제5조제3항)
-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(제6조)
- 위탁(제7조)
- 지도·감독(제8조)
- 지원 사업(제10조)

#### 나. 전제

-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(제5조제1항)과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 별 실태조사(제5조제3항)는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의 유사 용역을 준용하여 추계 하고, 실태조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5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
-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(제6조)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유사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하고,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수(기존 18개소, 2020년 신규설치예정 3개소)를 참고하여 연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전제 (붙임1 참고)
- 센터를 신규로 설치한 해의 신규 센터 운영기간은 6개월로 전제하여 추계(신규 센터 설치기간 6개월 소요 전제)
- 위탁(제7조)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

- 지도・감독(제8조)은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에서 제외
- 지원 사업(제10조)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·예술·여가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제하여 추계(붙임2 참고)
  -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기추진 사업으로 추계에서 제외
  - 문화·예술·여가 등 프로그램 지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유사사업 자료를 준용 하여 추계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 다. 추계기간

○ 5년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)

#### 라. 방법

○ 서울시 복지정책실,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7,983,800천원(연평균 1,596,760천원)
  - 총비용 =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비용 +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비용 +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 + 지원 사업 비용
    - = 29,000천원 + 29,800천원 + 6,625,000천원 + 1,300,000천원 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계
세입	-	-	_	ı	_	-	_
	소계(a)	_	_	-	_	-	_
세출	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(제5조제1항)	29,000	_	-	_	-	29,000
	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(제5조제3항)	29,800	_	ı	_		29,800
	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·운영 (제6조)	425,000	875,000	1,325,000	1,775,000	2,225,000	6,625,000
	지원사업 (제10조)	260,000	260,000	260,000	260,000	260,000	1,300,000
	소계(b)	743,800	$\begin{array}{c c} 1,13\overline{5},00\\ 0 \end{array}$	1,585,00 0	2,035,00 0	2,485,00 0	7,983,800
□총 비용(b-a) 743		743,800	1,135,00 0	1,585,00 0	2,035,00 0	2,485,00 0	7,983,800

4. 덧붙이는 의견: 없음

## 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**2** 02-2180-7954

e-mail: thdud36@seoul.go.kr

#### 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# 1. 비용요소

-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비용(제5조제1항)
-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비용(제5조제3항)
-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(제6조)
- 지원 사업 비용(제10조)

#### 2. 세부추계내역

- 가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비용 =  $\sum_{i=1}^{5} ($ 연간지원계획수립비용)i
 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  - 연간 비용 = 29.000천원
- ·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비용은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시행함
- · 지원계획 수립 비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29,000천원 준용(온나 라정책연구, 2018.)
- 나.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비용 =  $\sum_{i=1}^{5} (e^{2t} 2 \sin 2t \ln 8)i$ 
 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  - 연간 비용 = 29.800천원
- · 실태조사는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5년에 1회 실 시하는 것을 전제
- · 실태조사 비용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용역비 29,800천원 준용(온나라정책연구, 2019.)
- 다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 $\cdot$  운영 비용  $=\sum_{i=1}^{5} ($ 연간평생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)i
 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  - 연간 비용 = 6,625,000천원
    - ⇒ (신규센터 설치비용 + 6개월 센터사업비)+(기존센터 수×센터사업비)
    - · 1차년도 = 425,000천원
      - = 200,000천원+225,000천원
    - 2차년도 = 875,000천원
      - = (200,000천원+225,000천원) + (1개소×450,000천원)

- · 3차년도 = 1,325,000천원
  - $= (200,000 \pm 225,000 \pm 0) + (2\% \pm 450,000 \pm 0)$
- 4차년도 = 1,775,000천원
  - = (200,000천원+225,000천원) + (3개소×450,000천원)
- · 5차년도 = 2.225.000천원
  - = (200,000천원+225,000천원) + (4개소×450,000천원)
- ·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는 서울시 복지정책실 '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'사업비 준용
- ·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(기존 18개소, 2020년 신규설치예정 3개소)를 참고하여 연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, 센터를 신규로 설치한 해의 신규 센터 운영 기간은 6개월로 전제하여 추계(신규 센터 설치 기간 6개월 소요 전제)
  - ※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(붙임1 참고)
    - 센터사업비(인건비·운영비): 1개소 당 450,000천원

(신규센터 6개월 사업비: 450,000천원×50%=225,000천원)

- 센터 신규 설치비 : 1개소 당 200,000천원
- ·자료: 2020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사업설명서 및 추경 예산 반영하여 재작성
- 라. **지원 사업 비용** =  $\sum_{i=1}^{5} ($ 연간지원사업비용)i
 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  - 연간 비용 = 260,000천원
  - ·지원사업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·예술·여가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제(붙임2 참고)
  -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기추진 사업으로 추계에서 제외
  - 문화·예술·여가 등 프로그램 지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'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' 사업 비 준용하여 추계
  - ※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: 260,000천원
  - ·자료: 2020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재작성